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9일, 안규백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규백의원)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의 병역 처분 변경을 법률로 금지함으로써 병역기피자의 범죄 의도 실현을 방지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이 병역 이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경합범의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병역법」 위반 범죄 형량과 다른 범죄 형량의 구분이 가능하게 하여 범죄 유형에 따라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 변경 가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